

「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」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원 명



2022년 2월 21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66호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

군포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제7항 및 제8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(합격자 결정)

- ⑦ 임용 후 1년 이내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면접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.
- ⑧ 임용 전/후에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, 허위내용 또는 누락,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의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합격자 발표 후 1년 이내의 경우에 한해 면접점수 차순위자를 임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내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9조 제7항 및 제8항 개정 전 인사 채용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된 내규 조항을 적용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강 승 구
	담당자 성명 (전 화)	황 기 성 (390-7615)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9조(합격자 결정)</p> <p>① ~ ⑥ <생략></p> <p>⑦ 임용 후 3개월 이내 퇴사자가 발생한 경우 면접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.</p> <p>⑧ 임용 전/후에 응시원서 등 제출된 서류상의 기재착오, 허위내용 또는 누락,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의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합격자 발표 후 3개월 이내의 경우에 한해 면접점수 차순위자를 임용한다.</p> <p>⑨ ~ ⑪ <생략></p>	<p>제9조(합격자 결정)</p> <p>① ~ ⑥ <현행과 같음></p> <p>⑦ ----- 1년 -----</p> <p>⑧ -----</p> <p>⑧ -----</p> <p>----- 1년 -----</p> <p>⑨ ~ ⑪ <현행과 같음></p>	